



제302회 정례회

2011. 7. 18.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6월 30일
- 회부일자 : 2011년 7월 7일

### 3.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검사 수수료 반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수수료 반환 금지 문구 삭제 (안 제3조제4항)
- 수수료 반환 조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 시험용 검체 소요량 중 중복문구 등 수정 (별표)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

- 동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계획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시험을 의뢰하는 민원인에 대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나.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

- 수수료 반환 금지 규정이 제3조제4항과 제7조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3조제4항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민원인이 수수료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며, 시험용 검체 소요량 중 중복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